

석유사업법 개정방향

1. 머리말

석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의 필수품, 산업활동의 원동력, 나아가서는 국가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전략물자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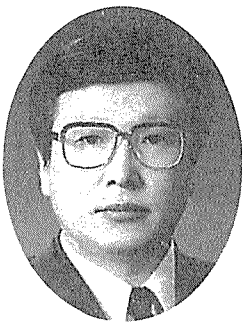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석유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우리가 소요로 하는 석유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석유사정은 석유 자원 부존의 편재성, 석유부존국의 자원무기화, 부존지역의 정치·경제적 불안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불안요인이 상시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우리가 지난 제1,2차 오일쇼크, 90년 걸프사태 등을 경험한데서도 잘 알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제석유사정의 특성을 고려, 지난 70년 석유를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석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석유가격, 수출입, 생산, 수급 등 석유산업 전반을 관리해 왔다. 이 결과, 우리는 제1,2차 오일쇼크와 같은 석유위기시에도 석유를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국민경제를 주름살 없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석유산업은 정유산업이 세계 9위의 생산력을 가질 만큼 성장하였고, 최근 국제석유시장도 석유소비국들의 석유비축, 공동대응 노력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석유산업에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이러한 여건변화와 세계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석유산업을 자유화하고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소,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석유산업의 자유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지난 9월 5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으로 확정되었



安哲植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서기관〉

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마련된 석유산업 자유화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석유사업법의 주요개정내용

가. 개정기본방향

금번 석유사업법의 개정의 기본방향은 석유산업의 자유화 취지에 맞추어 시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수출입자유화등 석유산업 전반을 최대한 자유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4.6%)가 높아 석유위기시 수급안정이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 점을 고려, 비상시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장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석유산업 자유화시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유제품의 품질확보 방안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석유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하에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 석유산업 자유화의 시행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나. 석유사업법의 목적 수정

그동안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석유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 취지에 따라 「석유사업의 합리적 조정·육성」부문을 삭제하고 그 대신 석유산업 자유화시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하여 「석유제품의 적정품질 확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의 목적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석유산업의 신규진입자유화 등

(1) 석유정제업

현재 석유정제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정제업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석유위기시 수급안정이
취약한 구조인 점을
고려, 비상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장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수요의 130%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에서는 경쟁 촉진을 위하여 현행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저장시설등 일정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석유정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을 자유화하였다.

(2) 석유 수출입업

현재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신고토록 하고 전년 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에서는 행정간소화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매년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저장시설등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면 석유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석유수출입만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 사용 석유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신고토록 현행 제도를 유지하였다.

(3) 석유판매업

현재 석유판매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저장시설 등 일정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을 자유화 하였다.

라. 석유수출입 자유화

현재 석유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에서는 현행 석유수출입계약 승인제를 폐지하여 석유수출입을 자유화 하였다. 다만 천연가스(LNG), 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여건, 국내가스산업의 실태등을 고려, 당분간 개별법(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출입승인제를 유지하여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석유비축 강화

석유산업 자유화시 석유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제일 큰 관심영역은 석유수

석유산업자유화는
자유화의 시행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급 및 가격안정 문제이다. 왜냐하면 석유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이자 국가 생존에 긴요한 전략물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석유산업 자유화와 함께 석유비축 관리를 강화하였다.

즉, 금번 개정안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아울러 민간석유비축 의무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석유비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량의 석유를 비축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민간석유비축 의무자가 석유비축 의무를 보다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타인의 저장시설에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석유비축 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석유비축대행업을 등록제로 신설하였다.

바. 석유판매가격의 자유화

현재 정부는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유종별,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과 함께 석유판매 가격고시를 폐지하여 석유판매가격을 자유화 할 계획이나, LPG가격은 국제 LPG시장상황 및 LNG와의 형평을 위해 현행 판매가격 고시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석유판매가격이 국제석유시장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급등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석유품질 관리

석유산업 자유화시 석유의 공급원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업자로 다원화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국내외 여러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들로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에서는 석유제품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였다.

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그 품질규격을 공표토록 하여 표시의 공정화 및 품질기준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었다. 따라서
저장시설 등 일정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석유정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아. 시행시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석유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하에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일시에 석유산업을 자유화할 경우, 적지 않은 시행착오 또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즉, 우선 제1 단계로 97. 1. 1부터 석유제품 판매가격 자유화, 석유수출입 자유화 및 석유판매업 신규진입 자유화 등을 시행하여 2년간 경쟁체제에 적응토록 하고 99. 1. 1부터 제2 단계로 석유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와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의 대외개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가.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금번 석유사업법개정으로 우리 석유산업은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와 개방을 통해 실질적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우리 석유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체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우리 석유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우리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석유수급안정기반 강화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산업 자유화가 달성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번 법개정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저장시설 확보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고, 석유비축계획 수립 등 석유비축제도를 보강함으로써 비상시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

우리 석유산업의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석유제품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유품질 관리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석유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저질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과
함께 석유판매가격
고시를 폐지하여
석유판매 가격을
자유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LPG가격은 현행 판매가격
고시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석유산업의 책임경영풍토 조성

그동안 우리 석유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하에 정부 의존적인 경영을 해 왔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우리 석유산업은 자율과 창의력에 의한 책임경영풍토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맺는말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경제 장·차관 회의에 상정하고자 대기중이다. 향후 동법 개정안은 경제 장·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으로써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번 석유사업법개정은 80년대 초반부터 연구해온 석유산업자유화 방안의 결실이며, 이에 따라 우리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와 규제로부터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석유업계는 자율과 창의로 경쟁체제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석유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석유업계의 자율과 창위가 지속적으로 폭발하여 우리 석유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신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각계 전문가 및 제현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석유사업법 개정예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각계 전문가 및 제현 여러 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바란다. ♣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80년대 초반부터
연구해온 석유산업자유화
방안의 결실이며,
이에 따라 우리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와 규제로부터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